## [주택 관련 연말정산 - 1편]

연말정산시 주택과 관련된 공제는 1. 월세액 세액공제 2.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3. 주택임차 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4.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로 4가지가 있다. 각 공제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.

	월세액 세액공제	주택청약 종합저축공제	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	장기주택 저당차입금
	" , 0 "		상환액공제	이자상환액 공제
세대원	가능	불가능	가능	가능. 단, 실거주 요건
1주택자	불가능	불가능	불가능	가능
오피스텔	가능.고시원도 가능	-	가능	불가능
주택규모	국민주택규모 이하	-	국민주택규모 이하	취득시
	또는 기준시가 4억이하			기준시가 5억이하

1편에서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알아보자.

### 1. 월세액 세액공제

월세액 세액공제는 1)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2)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3)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15%(17%)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

각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자.

### (1) 요건

# 1)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

- 무주택 세대 : 과세기간 종료일(12월 31일)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한다.
- 세대 및 세대의 구성원 : 거주자와 그 배우자,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서 거주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 포함) 및 형제자매,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 포함)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다.
- 세대주 :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혹은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,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.

### 2)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

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. 단,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

- 3)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 \*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.
  -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.(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 적을 기준으로 함.)
  - 「주택법」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
  -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
  - ②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.
 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: 5배
  - 그 밖의 토지 : 10배
  - ③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(즉, 임차건물에 전입신고 요함.)
  - ④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
- 월세액 =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 합계액 X 임대차계약기간총일수

### (2) 세액공제액

총급여액(종합소득금액)	세액공제액	
5,500만원(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) 이하	Min(월세액, 750만원) x 15%	
5,500만원(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)초과	Min(월세액, 750만원) x 12%	
7,000만원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) 이하		

- (3) 공제증명서류
- 1) 주민등록표등본
- 2) 임대차계약서 사본
- 3)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(계좌이체 내역, 현금영수증 등)